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재난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의의 방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수의계약에 의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허용 범위 확대(안 제13조제23호 및 제29조제1항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2) 대부료 면제 대상인 자에게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나 그 밖에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안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 안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 신설)

- 1)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의 횟수를 확대함.
-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16조 및 제34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로 확대함.

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한 경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

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 피해자에 대한 연체료의 요율 인하(안 제80조제2항 신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율을 100분의 50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11. ~ 9.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9조제1항제13호 · 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를 “제29조제1항제13호 · 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4호(종전의 제23호) 중 “제22호”를 “제23호”로 한다.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4조제7항 중 “4회”를 “6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

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5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6조 중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을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로, “제14조제1항 단서”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로, “100분의 70 이내의”를 “100분의 100의”로 한다.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를”을 “재난을”로, “사용”을 “사용·수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및 제3호(종전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2. 제6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일반입찰 및”을 “따른 일반입찰과”로, “지명입찰”을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입장료, 이용료 등”을 “입장료 등 이용료”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제31조의2제2호 계산식 중 “제31조제1항 단서”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4회”를 “6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 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4조 중 “제31조제1항 단서”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로, “100분의 70 이내”를 “100분의 100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을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및 제3호(중전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48조의3제3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리위탁기간”은 “위탁관리기간”으로”를 ““관리위탁”은 “위탁관리”로”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제5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을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定數)를 정한”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본문 중 “재산을”을 “재산 또는 물품을”로, “제14조 및 제31조”를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80조를”을 “제80조제1항 및 제3항을”로 한다.

별표 2의 비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집무실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집무실의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7조제6항·제7항, 제29조제1항제28호, 제34조, 제35조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체감의 최저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34조의 개

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2호(제1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부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체료를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일반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u>	<u><삭 제></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u>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u>	5. <u>제29조제1항제13호·제23호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u>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u>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u>	9. <u>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u> -- ----- -----

제14조(사용료) ① ~ ⑥ (생략)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⑧ (생략)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제14조(사용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6회-----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5조(사용료 체감) -----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
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
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
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
년도 사용료(제14조제1항 단서
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
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
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
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00분의 20 -----

-----.

제16조(사용료의 조정) -----

---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
----- 법 또는 다른 법
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 -----

---- 100분의 100의 -----

-----.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
----- 재난을

사용·수익 -----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
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
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
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
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
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
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
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
가한 경우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
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
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u><신 설></u>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u>지명입</u>	<u>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u> 4. 제13조제3항제8호에 <u>해당하여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u> ⑦ ----- ----- ----- ----- -----.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u>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u> 2. 제6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u>사용료의 100분의 50</u> 3. 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u>사용료의 100분의 30</u>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른 일반입찰</u> <u>과</u> ----- <u>제한입</u>
---	--

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 다. (생략)

2. (생략)

③ ~ ⑥ (생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25. (생략)

<신설>

찰 및 지명입찰-----

----- 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 입장료 등 이용료

나.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

-----.

1. ~ 25. (현행과 같음)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

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④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하여 공고하는 청년친화강소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⑤ ~ ⑧ (생략)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5. (생략)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1. (생략)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기간)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4. 5.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

-----.

-----.

1. (현행과 같음)

2.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제31조제
 1항 단서에 따라 한시
 적으로 인하한 요율

$$\times \frac{\text{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text{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
 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를 감경받거나 제31조 × -----
제1항 단서-----

②

6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④ (생략)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u>100분의 70 이내의</u>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u>제29조제1항제12호에</u>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	<u>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4조(대부료의 조정) ----- ----- -----<u>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정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u> ----- -----<u>100분의 100</u> <u>의</u> ----- -----.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 ----- ----- ----- -----. 1. <u>제29조제1항제12호에</u> 해당하는 <u>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u> -----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 (생략)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1.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

2. 3. (현행과 같음)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제23호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

-- 범위에서 해당 -----

----- .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 · ② (생략) ③ 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위탁기간”은 “위탁관리기간”으로, “사용·수익”은 “대부”로 본다.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	나. 제29조제1항제20호 ·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5항----- ----. ----- ----- “관리위탁” 은 “위탁관리”로----- -----.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
---	--

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하되,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1. 구입한 것: 구입가격
2. 교환한 것: 교환가격
3. 수용한 것: 보상금액
4. 그 밖의 것

가. 토지: 제3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입목(立木)·죽(竹): 시가로 정한 단가에 수목(樹木)의 부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庭園樹)나 그 밖에 수목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라.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재
산: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
는 액면금액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재
산: 해당 수익권 취득 당시
를 기준으로 재산별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
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
(定數) 관리대상 물품(이하 “정
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
로 한다.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생
략)
<신설>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정수(定數)를 정
한 -----
-----.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
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
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②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제1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
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
산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illegible]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80조제1항 및 제3항

	이제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연 락 처	(044) 205 - 3787